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240호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전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2016.6.1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240호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해 수출국에 공통으로 요구하는 수입위생요건의 기본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 해외작업장 준수사항 중 수출제품의 특성 반영(안 제4조)

- 1) 수출증명서 확인사항과 거리가 먼 수출국 자국 내 유통 판매 사항 삭제함
- 2) “한국 및 수출국의 위생규정준수“ 표현을 ”한국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입축산

물이 한국 규정을 준수하여 생산·관리되도록 함

나. 수출위생증명서 표준안과 필수요건 수정(안 제5조 및 별표2)

- 1) 수출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국어 병기 사항과 상미기한을 유통기한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다. 수입허용 축산물의 종류 중 수정사항 반영(안 별표1)

- 1) 식품으로 유형분류가 잘못된 축산물의 종류와 선적일 기준으로 위생 평가 대상을 면제한 축산물 종류 반영
- 2) 고시제정일(2.4) 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입금지 되었다 수입재개 된 미국산 가금육을 수입허용축산물로 반영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축산물위생안전과, 전화 043-719-3247, 팩스 043-719-32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240호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제2016-9호, '16.2.4)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00월 0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의 축산물 및 그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2.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하며, ‘지육’은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car cass)를, ‘정육’은 지육으로부터 뼈를 분리한 고기를, ‘내장’은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 췌장, 비장, 신장, 소장 및 대장 등을, ‘그 밖의 부분’은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된 가축으로부터 채취, 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을 말한다.
3. “원유”란 착유 상태의 우유와 양유(산양유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5. “식육가공품”이란 식육을 원료로 가공한 것으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 우지, 식용 돈지를 말한다.
6. “유가공품”이란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를 말한다.
7. “알가공품”이란 식용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을 말한다.
8. “수출국”이란 축산물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를 말한다.
9. “수출축산물”이란 수출국의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을 말한다.
10. “해외작업장”이란 수출축산물의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수출국에 소재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한국정부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제3조(수입허용 축산물)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별 축산물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출축산물·해외작업장 요건 등) 수출국은 수출축산물과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출축산물은 한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고 도축·집유·제조·가공·포장·운송·취급·보관되어야 한다.
2. 수출축산물은 건강한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수출국 정부 위생검사 결과 식용에 적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3. 수출축산물은 공중위생 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물질(항균제·농약·홀몬제·중금속 및 방사능 등),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황색포도상구균·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장출혈성대장균 등), 식품의 조사처리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수출축산물을 포장한 용기 또는 포장지는 한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5. 수출축산물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포장·보관·관리하여야 하고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취급되어야 한다.
6. 수출축산물은 제품명, 제조사, 제조일(또는 유통기한) 등이 적절하게 표시 되어 있어야 한다.
7. 수출축산물 중 식육가공품이나 알가공품의 경우 각각의 해당 가공품에

원료로 사용되는 식육 및 알의 원산지는 가능한 한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수출국이어야 한다.

8.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곳으로 한국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이어야 한다.
9. 해외작업장은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또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서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0. 해외작업장의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 제품의 생산 및 출하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기준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문서로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1. 해외작업장에서 수출축산물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으로 관리된 것으로서 한국 또는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해외작업장은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해 회수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폐기 포함) 등을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그리고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위생증명서)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축산물에 대해 다음

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준수여부
2.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3.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4. 생산 또는 가공일자, 유통기한(또는 상미기한 등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
5. 컨테이너 번호(필요 시)
6.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
7.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수출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상호간에 협의된 사항

제6조(통보 등)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통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1. 수출국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수출축산물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그 사실을 전자문서,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가. 잔류물질 또는 병원성미생물 오염 등 식품안전과 관련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관련정보가 있는 경우
 - 나. 가목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회수를 하거나 회수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정보가 있는 경우
2. 수출축산물에 대한 도축·집유·제조·가공·포장·운송·취급·보관 등 양국 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요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

을 사전(한국에 수출하기 전)에 통보·합의하여야 한다.

3. 한국정부는 제1호 또는 2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필요 시 수출국에 위생검사관을 파견하여 관련 자료 요청 및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와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수출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정부에 기 발급된 수출 위생증명서의 전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수출국은 수출축산물의 원료 또는 최종 제품에 대해 잔류 물질(검사기관, 연간 검사계획, 검사방법, 검사결과 등) 통제를 위한 관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매년 6월까지 한국 정부에 전년도 실적 및 당해 년도 계획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해외작업장 관리) 수출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해 점검계획을 가지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실사) ① 수출국 정부 및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요구에 응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위생검사관은 수출국 정부 방문 및 관계관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고,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련 규정 및 생산기록, 작업장 시설 점검, 종사자와의 인터뷰 및 작업장의 위생 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4조를 위반한 때 또는 제6조의 통보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기관 관리) 수출국 정부는 수출축산물 위생 관련 시험·검사를 담당하는 정부 또는 민간 검사기관에 대하여 숙련도 평가, 품질관리 기준 평가 등 정기적인 검사능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중단조치 등) ① 한국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수출국의 수출축산물에 대해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거나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출축산물이 수입 또는 유통과정 중에 제4조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수출국에서 수입위생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제5조에 따라 발급한 수출위생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② 한국정부는 시정조치가 필요하여 수출국 정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가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수출국의 수출축산물에 대해 수입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수입금지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이 질병발생 등의 사유로 수입이 금지된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제5항에 따라 수입 금지가 해제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수입위생요건) 한국 정부와 수출국 정부 간 수입위생요건 및 수출위생증명서를 별도 협의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한국으로 수출되는 수출축산물(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별표]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또는 지역) 축산물(제3조 관련)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또는 지역별)의 축산물은 다음과 같다. 단 가목 및 나목에서 적용되지 않는 축산물은 다목, 라목 및 마목에 적용한다.

가. 식육 및 식육가공품(해당 축종에 한함)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네덜란드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뉴질랜드	소·돼지·산양·면양 고기 및 식육가공품(소·돼지·산양·면양고기를 원료로 한함)	
	사슴고기 및 식육가공품(사슴고기를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자비우유	
덴마크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독일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멕시코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쇠고기	
	자비우유	
미국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쇠고기 및 식육가공품(쇠고기를 원료로 한함)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벨기에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브라질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스웨덴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스위스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스페인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슬로바키아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아르헨티나	자비우유	중심부온도 70℃, 1분 이상
우루과이	자비우유	중심부온도 70℃, 1분 이상
	쇠고기	
아일랜드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영국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오스트리아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이탈리아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중심부온도 69℃, 30분 이상 또는 비가열제품 은 400일 이상 숙성처리
일본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열처리
중국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중심부온도 70℃, 30분 이상, 75℃, 5분 이상, 80℃, 1분 이상
	토끼고기	
칠레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쇠고기	
캐나다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쇠고기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태국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폴란드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프랑스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열처리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핀란드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필리핀	닭고기	
헝가리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돼지고기 및 식육가공품(돼지고기를 원료로 한함)	
호주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가금육을 원료로 한함)	
	소·돼지·산양·면양 고기 및 식육가공품(소·돼지·산양·면양고기를 원료로 한함)	
	사슴고기 및 식육가공품(사슴고기를 원료로 한함)	
	자비우유	

* 가금육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꿩의 고기를 말한다.

** 열처리란 중심부 온도를 기준으로 60℃에서 507초, 65℃에서 42초, 70℃에서 3.5초, 73.9℃에서 0.51초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처리를 말한다.

나. 식용란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뉴질랜드·덴마크·폴란드·스페인·스웨덴·호주·네덜란드·일본·헝가리·캐나다·영국·독일·미국	식용란	

다. 식육가공품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네덜란드	베이컨류, 햄류	
뉴질랜드	건조저장육류, 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 식용우지,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	
덴마크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햄류	
독일	소시지류, 햄류	
멕시코	식육추출가공품	
몽골	건조저장육류,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추출가공품	
미국	갈비가공품,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 식용돈지, 식용우지,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 햄류	
베트남	식육추출가공품	
벨기에	햄류	
벨라루스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	
북한	식육추출가공품	
브라질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추출가공품, 햄류	
스웨덴	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스페인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 양념육류, 햄류	
싱가포르	햄류	
아르헨티나	건조저장육류, 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영국	분쇄가공육제품	
우루과이	식육추출가공품, 햄류	
이탈리아	베이컨류, 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 햄류	
인도	식육추출가공품	
인도네시아	식육추출가공품, 햄류	
일본	식육추출가공품, 햄류	
중국	갈비가공품,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 양념육류, 햄류	

칠레	소시지류, 햄류	
캐나다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 양념육류, 햄류	
콜롬비아	식육추출가공품	
태국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 햄류	
파라과이	식육추출가공품	
폴란드	베이컨류, 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 햄류	
프랑스	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 햄류	
핀란드	소시지류	
필리핀	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 양념육류, 햄류	
헝가리	베이컨류, 소시지류	
호주	갈비가공품, 건조저장육류, 베이컨류, 분쇄가공육제품, 소시지류, 식용우지, 식육추출가공품, 양념육류, 햄류	

* 쇠고기, 산양·면양고기, 사슴고기를 원료로 하는 식육가공품은 가목을 따른다. 단 BSE 비발생국가에서 생산한 멸균처리 이상의 식육가공품은 제외한다.

라. 유가공품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그리스	가공치즈, 발효유류, 아이스크림류, 자연치즈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스크림류	
네덜란드	가공치즈, 농축유류, 버터류, 버터유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자연치즈, 조제유류	
노르웨이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자연치즈	
뉴질랜드	가공치즈, 버터류, 버터유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자연치즈, 조제유류	
대만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덴마크	가공치즈,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자연치즈, 조제유류	
독일	가공유류, 가공치즈, 발효유류, 버터류, 버터유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우유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자연치즈, 저지방우유류, 조제유류	
라트비아	유청류	
러시아	버터류, 분유류, 유당, 아이스크림류	
룩셈부르크	유크림류	
리투아니아	가공치즈,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당, 유청류, 자연치즈	

말레이시아	가공유류, 가공치즈,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멕시코	버터류, 아이스크림류, 유청류, 자연치즈	
미국	가공유류, 가공치즈, 농축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버터유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우유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자연치즈, 저지방우유류, 조제유류	
방글라데시	버터류	
벨기에	가공유류, 가공치즈, 버터류, 버터유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청류, 유크림류, 자연치즈, 저지방우유류	
불가리아	자연치즈	
브라질	가공치즈, 아이스크림류, 자연치즈	
사우디 아라비아	가공치즈	
사이프러스	유크림류, 자연치즈	
스웨덴	분유류, 유청류, 자연치즈	
스위스	가공유류, 가공치즈,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자연치즈, 조제유류	
스페인	가공유류, 가공치즈,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유청류, 유크림류, 자연치즈	
슬로바키아	유크림류	
싱가포르	가공유류, 가공치즈,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청류	
아랍에미리트	버터류	
아루바	분유류	*네덜란드령
아르헨티나	가공치즈, 버터류, 분유류, 우유류, 유청류, 유크림류, 자연치즈	
아일랜드	가공치즈,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청류, 유크림류, 자연치즈, 조제유류	
에스토니아	버터류, 분유류, 유청류, 자연치즈	
에쿠아도르	자연치즈	
영국	가공유류, 가공치즈,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우유류, 유청류, 유크림류, 자연치즈	
오스트리아	가공치즈, 발효유류, 분유류, 유당, 유청류, 자연치즈, 조제유류	
우루과이	버터류, 분유류, 우유류, 유청류, 유크림류, 자연치즈	
우크라이나	분유류,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농축유류	
이스라엘	유당	
이탈리아	가공유류, 가공치즈,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우유류, 유당, 유크림류, 자연치즈	
인도	버터류, 분유류, 유당, 유청류, 자연치즈	
일본	가공유류, 가공치즈, 농축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당, 유크림류, 자연치즈, 조제유류	

중국	가공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크림류	
체코공화국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칠레	농축유류, 분유류, 유청류, 자연치즈	
카자흐스탄	자연치즈	
캐나다	가공치즈,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자연치즈, 조제유류	
크로아티아	자연치즈	
태국	아이스크림류	
터키	아이스크림류, 유당, 유청류, 자연치즈	
파키스탄	버터류, 분유류	
포르투갈	우유류	
폴란드	가공치즈,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우유류, 유청류, 자연치즈	
프랑스	가공유류, 가공치즈, 발효유류, 버터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유단백가수분해 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자연치즈, 저지방우유류, 조제유류	
핀란드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자연치즈	
필리핀	가공유류, 가공치즈,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크림류	
헝가리	가공치즈	
호주	가공치즈, 농축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버터유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우유류, 유단백가수분해 식품, 유당, 유청류, 유크림류, 자연치즈, 저지방우유류, 조제유류	
홍콩	아이스크림류	

마. 알가공품

국가 또는 지역	종류	비고
네덜란드	난백분, 난백액, 난황분, 전란분	
대만	피단	
덴마크	난백분, 난황분, 전란분	
독일	난백분, 난백액, 난황분	
라트비아	난황액	
말레이시아	난백액, 난황액, 전란액	
멕시코	난황액	
미국	난백분, 난황분, 난황액, 알가열성형제품, 전란분	
벨기에	난백분, 난백액, 난황분	
스웨덴	난백분, 난황분, 전란분	
스위스	난황액	
스페인	난백분	
우크라이나	난백분, 난황분, 전란분	

이탈리아	난백분, 난황분, 전란분, 난황액	
인도	난백분, 난황분, 전란분, 전란액	
일본	난백분, 난황분, 난황액, 알가열성형제품	
중국	난백분, 난황분, 난황액,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전란분, 전란액, 피단	
캐나다	난백분, 난황분, 난황액, 전란분, 전란액	
태국	난황액, 피단	
페루	난백분	
프랑스	난백분, 난백액, 난황분, 난황액, 전란분	